

2025. 10.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승선 의원)

의안 번호	2025-138
----------	----------

발의연월일 : 2025. 10.

발의자 : 최승선, 주상현,
오승경, 황배연 의원 (4명)

1. 제정이유

- 본 조례는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 기반 마련과 지역 실정에 맞는 조사·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나아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마.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아.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자.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차.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여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불임자료

- 가. 조례제정안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관련 법령 발췌서
- 라. 전북특별자치도 유사조례 현황
- 마. 타 시·도 조례
- 바. 타 시·군 조례
- 사. 입법예고 결과
- 아. 부서의견 조회 결과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김제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김제시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밖에 시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 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 조례안 관련내용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밖에 시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제2호에 따라 비용발생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 방문보건팀장 김미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 관련 법령 발췌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 6. 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유사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조례명	제정일
	여	부		
전라북도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완주군	○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9.05.16
진안군	○		「진안군 고혈압 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	21.12.31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2.30
고창군		○		
부안군		○		

□ 타 시 · 도 동일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3.10.11
충주시	「충주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4.09.27
제천시	「제천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4.10.11
거제시	「거제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5.03.20

□ 타 시 · 도 조례 현황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10-11 조례 제 70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 방지, 연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방지 및 연구 등 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통계관리 등)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8조(재발방지사업)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에 입원한 심뇌혈관질환자에게 교육·상담·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4.10.11 조례 제20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제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조례안명 :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5. 9. 15. ~ 2025. 9. 22.(5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라율

정책지원팀장 김선희

의회사무국장 전급 2025. 9. 23.

이영식

첨조자

시행 의회사무국-5095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금빛 희망! 꿈을 수학하는 김제

□ 부서의견 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제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조례안명 :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견조회 기간 : 2025. 9. 15. ~ 2025. 9. 22.(5일간)
-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4883호(2025. 9. 15.)로 공문 협의
- 의견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라윤

정책지원팀장

김설희

의회사무국장 전달 2025. 9. 23.

이명식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6093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세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83-540-3075 팩스번호 083-540-2777 / nekim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금빛 희망! 꿈을 수학하는 김제